

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이 순 관

〈보험감독원 분쟁조정2국, 조정역〉

1. 사고개요

1988년 9월 2일 보험계약자 K와 보험자 J 사이에 경기도 용인군에 소재한 철근벽돌조 슬레이트즙 건물과 동 건물내에 수용되어 있는 동산(기계기구 및 제품 등)을 보험목적으로 한 화재보험계약이 이루어졌다. 보험금액은 각각 1억7천만원과 2억원이었다. 그후 1988년 10월 19일, 위 보험계약 내용중 보험목적 및 보험금액이 RC조 슬레이트즙 공장1동 1억1천만원, 동산 5억5천만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1988년 12월 27일 건물증축작업과 관련하여 기존 공장건물의 철골트러스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중 용접부주의로 용접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해 건물과 동산이 소실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에 있어 보험자 J는 본 건 사고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을 이유로 면책처리하였고 결국 보험자와 계약자간의 분쟁에 이르게 되었다.

2. 당사자주장

신청인 K는 공장건물에 연결하여 천막으로 쟁을 내고 기계일부와 원·부자재를 수용하고 있던중 1988년 9월 29일부터 천막부분을 포함하는 건물을 본공장건물과 연결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회사 영업소장 L 및 모집인 H에게 건물이 증축된다는 사실을 구두로 이미 말한 바 있고, 위 영업소장 및 모집인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목격한 바 있으며, 또한 “계약후 알릴 의무”등의 조항에 대하여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후 그러한 조항을 들어 일방적으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신청인 K의 주장이다.

반면, 피신청인 J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해 신청인 K는 1988년 9월 9일부터 사고당시까지 건물증축중이었으므로 화재보험약관 제6조(계약후 알릴의무)에 의거해 지체없이 증축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았어야 하나 신청인은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동약관 제8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자가 증축예정이라고 보험자에게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증축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모집인 H가 증축현장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집인은 고지 및 통지수령 권한이 없는 점, 영업소장이 1988년 12월 12일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건물증축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인지하였으며 계약자도 공사가 계속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판정내용

본건 사안을 심의한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자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지급판정을 하였다.

「..... 위험의 현저한 증가, 변경이 있는 건물의 변경·개축 또는 증축과 관련하여 앞에서 본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약관 제8조에서는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가 안 때로 부터 30일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략…… 관련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본건 화재보험 계약체결전에도 보험계약자가 모집인 H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장 신축과 관련해 추가로 5억원을 화재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고 1988년 9월 18일 영업소장 L의 입회하에서 본건 보험계약체결시 위계약자가 건물신축허가가 나면 신축을 하여 추가로 5억원을 가입하겠다고 진술한 사실, 그리고 88년 10월 6일 및 88년 12월 12일 모집인 및 영업소장이 각각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장증축을 목격하였으며 위 계약자로부터 준공검사가 끝나는 대로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 1987년 1월 7일 피신청인이 계약 후 알릴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민원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본건 보험계약해지통보일의 30일전에는 위 보험목적물의 증축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신청인은 건물증축사실을 안 때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계약해지통보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평 설

우리나라 상법 제652조에 의하면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

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객관적으로 위험이 현저히 증가·변경되었을 때의 통지의무(계약후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통지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653조에서는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법 제652조의 객관적 위험변경·증가의 경우에는 1개월내라는 계약해지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상법 제653조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험변경·증가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화재보험약관 제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도 위 상법조문을 원용하여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계약후 알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약관 제8조에 의하면 현저한 위험의 변경·증가와 관련된 위 약관 6조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험의 변경·증가사실을 보험자가 안 날로 부터 30일이 지났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약관규정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험증가·변경의 경우

아무런 계약해지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않는 상법조문과는 달리 객관적 위험변경·증가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험변경·증가와의 구별없이 동일하게 1개월의 계약해지 제척기간을 두고있기 때문에 상법조문에 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때 위험의 현저한 증가·변경이라 함은 계약체결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였다면 위험을 인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정도의 위험변경 또는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건 건물의 증축은 위험의 현저한 증가·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건물증축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면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보험자가 건물 증축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이 경과하였으면 앞에서 본 약관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는 보험모집인이 공장증축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모집인이 영업소장 L의 관리하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모집인을 통하여 영업소장이 건물증축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위 영업소장이 건물증축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자의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물증축사실을 계약해지 30일전에는 위 영업소장이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 지급판정을 내린 것으로 사료된다. ◎◎